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김봉희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12월 1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2월 2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안 제9조)

나. 기타 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 근거조항을 변경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